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3가단1282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한민국

피고1. A

2. B

피고들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 친권자 모 D

변론 종결2024. 4. 23.

판결 선고2024. 6. 11.

주 문

1. 피고 A과 E 사이에 2023. 2. 23. 체결된 17,005,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B와 E 사이에 2023. 2. 23. 체결된 17,005,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7,00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E의 딸인 D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E에 대하여 2019. 12. 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아래 표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본세 총 114,707,85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부가가치세	2017년 1기	2017. 6. 30.	2017. 10. 1.	2017. 12. 31.	14,568,030	3,312,520
2017년 2기	2017. 9. 30.	2017. 10. 1.	2017. 12. 31.	13,683,000	15,168,970	
2017년 2기	2017. 12. 31.	2018. 3. 8.	2018. 3. 31.	13,164,620	19,957,270	
2018년 1기	2018. 3. 31.	2018. 4. 1.	2018. 4. 25.	13,341,000	20,224,550	
2018년 1기	2018. 6. 30.	2018. 9. 10.	2018. 9. 30.	12,418,890	18,398,470	
2018년 2기	2018. 9. 30.	2018. 10. 1.	2018. 10. 25.	12,727,000	18,854,900	
2018년 2기	2018. 12. 31.	2019. 3. 7.	2019. 3. 31.	12,291,750	17,546,040	
2019년 1기	2019. 3. 31.	2019. 4. 1.	2019. 4. 25.	12,441,000	17,759,130	
2019년 1기	2019. 6. 30.	2019. 9. 6.	2019. 9. 30.	2,289,010	3,164,200	
2019년 2기	2019. 9. 30.	2019. 12. 5.	2019. 12. 31.	1,193,510	1,623,110	
2019년 2기	2019. 12. 31.	2020. 1. 9.	2020. 1. 31.	493,500	508,300	
종합소득세	2018년	2018. 6. 30.	2018. 11. 1.	2018. 11. 30.	1,778,000	2,591,150
	2018년	2018. 12. 31.	2019. 8. 1.	2018. 8. 31.	397,270	409,180
	2018년 10월	2018. 11. 30.	2019. 2. 8.	2019. 2. 28.	426,230	439,010
	2019년 1월	2019. 2. 28.	2019. 5. 9.	2019. 5. 31.	351,170	361,700
	2019년 2월	2019. 3. 31.	2019. 6. 5.	2019. 6. 30.	346,210	356,590
	2019년 4월	2019. 5. 31.	2019. 8. 6.	2019. 8. 31.	435,650	448,710
사업소득세	2019년 3월	2019. 4. 30.	2019. 9. 4.	2019. 9. 30.	63,840	65,750
2019년 5월	2019. 6. 30.	2019. 9. 4.	2019. 9. 30.	357,510	368,230	
2019년 6월	2019. 7. 31.	2019. 10. 2.	2019. 10. 31.	301,500	310,540	
2019년 7월	2019. 8. 31.	2019. 11. 6.	2019. 11. 30.	374,990	386,230	
2019년 8월	2019. 9. 30.	2019. 12. 4.	2019. 12. 31.	590,810	608,530	
2019년 3월	2019. 4. 30.	2020. 1. 2.	2020. 1. 31.	84,540	87,070	
	2019년 10월	2019. 10. 31.	2020. 1. 7.	2020. 1. 31.	95,540	98,400
	2019년 9월	2019. 10. 31.	2020. 1. 7.	2020. 1. 31.	191,090	196,820
근로소득세	2018년 10월	2018. 11. 30.	2019. 2. 8.	2019. 2. 28.	152,990	157,570

부가가치세	2017년 1기	2017. 6. 30.	2017. 10. 1.	2017. 12. 31.	14,568,030	3,312,520
2019년 1월	2019. 2. 28.	2019. 5. 9.	2019. 5. 31.	27,230	28,040	
2019년 2월	2019. 3. 31.	2019. 6. 5.	2019. 6. 30.	121,970	125,620	
합계	114,707,850	143,556,600				

다. E은 2023. 2. 23. 피고들과 각 17,005,000원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계좌로 위 각 돈을 입금하였다.

라. E은 위 2023. 2. 23. 기준으로 F협동조합의 주식 30만 원 상당 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약 30만 원 상당의 주식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원고에 대하여 본세 114,707,850원 이상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들은, E이 입금한 돈은 피고들의 부모인 C과 D이 현금으로 모아 둔 돈을 E에게 부탁하여 입금한 것일 뿐이어서 E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E의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피고들의 법정대리인인 D, C이 선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각 위 증여금 17,00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김진영

1) 2023. 10. 26. 기준